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통계청에서 실시하는 ‘도시가계조사통계’가 ‘가계동향조사’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의견조회(2024. 11. 21. ~ 2024. 12. 6.) 및 행정예고
(2024. 11. 21. ~ 2024. 12. 18.) 결과 별도 의견 없음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**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
일부개정고시안**

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제1항 중 “도시가계조사통계”를 “가계동향조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8조(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지급) ① 주거용 건축물('89. 1.25. 이후 무허가 건축물을 제외한다)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 후 이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2월분의 주거이전비(통계청이 조사·발표하는 <u>도시가계조사통계</u> 의 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)를 지급한다. 다만,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 건물 등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	제28조(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지급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가계동향조사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